

공 보	기 관 의 장

## 제 1023 호 2016. 8. 25. (목)

### 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9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0호[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1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 8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45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4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11

### 공 고
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807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] ..... 13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815호[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] ..... 2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818호[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-30, 3-41호선)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] ..... 21

안 내	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**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 
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**박천동** 

201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9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자치행정과, 문화체육과, 창조경제과, 안전정보과의 분장사무를 별  
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 본청 실·과 사무분장표 (제7조 관련)

부서명	분장사무
자치행정과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삭 제> 7. <삭 제> 8. ~ 53. (현행과 같음)
문화체육과	1. ~ 45. (현행과 같음) 46.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<신 설>
창조경제과	1. ~ 55. (현행과 같음) 19. <삭 제> 20. ~ 58. (현행과 같음) 59.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<신 설> 60.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<신 설>
안전정보과	1. ~ 67. (현행과 같음) 68.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임에 관한 사항 <신 설>

◆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 ◆

**1. 개정이유**

가.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,

나. 우리 구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정 함.

**2. 주요내용**

가.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조정

○ 자치행정과 → 창조경제과

나. 승강기 관련 업무

○ 창조경제과 → 안전정보과

다. 전통공예산업 육성 업무

○ 창조경제과 → 문화체육과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 
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박천동



201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480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세부결재 한계(제4조제1항 관련)

행정지원국

【자치행정과】 : 새마을금고관리 업무 삭제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실 · 과 장	부 구 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
6. 새마을금고관리 <삭 제>	가.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	기안				○
	나. 새마을금고 지도감독	기안		○		

복지경제국

【창조경제과】 : 승강기 관련 업무 삭제, 새마을금고관리 업무 신설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실 · 과 장	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
28.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<삭 제>	가.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	기안		○		
	나. 승강기 검사의 지연	기안		○		
	다.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	기안		○		
53. 새마을금고관리 <신 설>	가.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	기안				○
	나. 새마을금고 지도감독	기안		○		

건설도시국

【안전정보과】 : 승강기 관련 업무 신설

단 위 업 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구분				구 청 장 결 재
		담 당 자		실 · 과 장	국 장	
		실 무 자	담 당			
51.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<신 설>	가.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	기안		○		
	나. 승강기 검사의 지연	기안		○		
	다.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	기안		○		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가.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하고,
- 나. 이와 함께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,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조정 : 자치행정과 → 창조경제과
- 나. 승강기 관련 업무 : 창조경제과 → 안전정보과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 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박천동



201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1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
일부개정규칙**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숙직근무자의 휴무)”를 “(당직근무자의 휴무)”로 하고, 같은  
조 본문 중 “숙직근무자(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”를 “당직근  
무자(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)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 
같이 신설한다.

나만, 금요일·토요일·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와 토요일·공휴일 일직  
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만,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 
경우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금·토·공휴일 전일의 숙직 근무자와 토·공휴일 일직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원활한 당직운영을 위하여 휴무일을 보장하고, 재택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당직근무자의 휴무
  - 금요일·토요일·공휴일 전일의 숙직 근무자와 토요일·공휴일 일직 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.
- 재택 당직근무자 수당 지급
  - 재택 당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당직수당을 지급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45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18 (중산동)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척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8. 2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46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4길 47-4 (염포동)외 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8. 25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증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4길 47-4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000-11	2016-08-25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0길 16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5-1	2016-08-25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6 - 807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

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6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 『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』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였으나,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5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지정방법 : 경쟁방법
2. 금 고 수 : 단수금고(1개)
3. 약정기간 : 3년 (2017. 1. 1 ~ 2019. 12. 31)
4. 신청자격
  -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우리 구 관내에 영업점(지점)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, 수협중앙회(은행법 제2조 및 제5조)
5.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100점 기준)
  -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1점)
  -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8점)
  -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(20점)
  - 금고업무 관리 능력(22점)
  -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( 9점)
  - ◆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불임(별표1)

## 6. 신청 절차

### 가. 재공고 및 관련서류 열람

- 재공고 및 열람기간 : 2016. 8. 25. ~ 8. 30.
- 재공고 장소 :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
- 관련서류 열람 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(1층 민원실)

### 나. 신청(제안)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6. 8. 25. ~ 8. 30. 18:00 까지
- 접수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(1층 민원실)
- 제출부수 : 11부
- 제출서류
  -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신청서
  -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
- 제출방법 : 방문제출

## 7. 심사·평가 방법

- 우리 구「금고지정심의위원회」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·평가
-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
  - ※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임
-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
- 기타「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심사·평가

## 8. 금고의 주요 기능

-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
- 구 소유 현금과 유가증권(수입증지 등)의 출납 및 보관
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

**9.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**

- 구 금고로 지정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항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
-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포기하거나,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며, 앞으로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*10. 기 타**

- 신청(제안)서는 우리 구 금고지정 신청안내(제안서 작성안내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(제안)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
단, 금융 기관별 순위 결정, 적격성 심의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[별표 1]

##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 비고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<p>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----- (1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평가기관(6점)</li> <li>- 국내평가기관(4점)</li> </ul> <p>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----- (2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</li> <li>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 7점)로 평가</li> <li>- 고정이하 익신비율 (건전성, 7점)</li> <li>- 자기자본이익률 (수익성, 6점)</li> <li>-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유동성, 1점)</li> </ul> <p>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.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.</p>	31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<p>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----- (6점)</p> <p>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----- (5점)</p> <p>다. 구에 대한 대출금리----- (4점)</p> <p>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----- (3점)</p>	18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<p>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----- (8점)</p> <p>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----- (7점)</p> <p>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점)</p> <p>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</p>	20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<p>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-- (7점)</p> <p>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</p> <p>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----- (5점)</p> <p>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----- (7점)</p> <p>라.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----- (3점)</p>	22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	<p>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----- (5점)</p> <p>나.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----- (4점)</p> <p>※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구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</p>	9



## [별표 2]

**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3조제1항 관련)****I. 일반원칙**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가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)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한다.

**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****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****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**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(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)
- 평가방법
 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배점
  -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

**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**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
- 다만,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 - 총자본비율(안정성)
    -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 자본비율(안정성 7점)로 평가.
  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
  - 자기자본이익률(수익성)
  -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)
    - ※ 금융감독원,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 
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**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**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

-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

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**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**

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

-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

-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,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여 배점
-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 점처리 가능
  -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

#### 4. 금고업무 관리 능력

##### 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

- 금고관련 세입.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.평가한 후 배점
- \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

##### 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.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.평가한 후 배점

##### 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.평가한 후 배점

##### 라.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

-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

#### 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

##### 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.평가한 후 배점

##### 나.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

-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.평가한 후 배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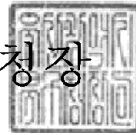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815호

##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

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『내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내부업법” 이라한다.)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

- 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
- 2. 공 고 기 간 : 2016. 8. 25 ~ 2016. 9. 26(33일간)
- 3. 소재확인 대상업체 내역 :

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
16-울산북구-0001	MISOIN대부	허대겸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38, 302호(명촌동, 솔레미움)
16-울산북구-0002	MISOIN대부중개		

- 4. 공고내용
  - 해당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북구청 창조경제과로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내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.

※ 문의 및 소재확인 통지처 : 창조경제과 (052-241-7705)  
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(연암동) 북구청 6층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- 818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-30, 3-41호선)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북구 매곡동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-30, 3-41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8. 25.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사업의 개요

- 사업기간(예정) : 2016 ~ 2018(23개월)

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	사업예정지(위치)	사업내용	사업시행자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울산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-30, 3-41호선)사업(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)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일원	도로확장 L=640m B=25~30m	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로 201(신정동)

#### 2. 공람장소, 공람기간

사업명	열람장소	열람기간
매곡 진입도로 확장공사	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도로1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	2016.08.25. ~2016.09.08(14일간)

#### 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2016.08.25. ~ 2016.09.08.(14일간)
-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도로1팀(☎052-229-585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사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면적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자		
						성명	주소	권리자	주소	권리
1	신천동	221-31	전	168	168	울산광역시				
2	신천동	221-21	도	63	63	울산광역시				
3	신천동	221-13	도	274	274	울산광역시				
4	신천동	221-14	재	162	162	울산광역시				
5	신천동	221-1	천	149	149	울산광역시				
6	신천동	220-7	전	34	34	서천군	홍수단 울산리 67			
7	신천동	220-2	도	7	7	진황대	울산 남구약수3길 116-1(울산동산142-8)			
8	신천동	220-3	터	155	155	울산광역시				
9	신천동	220-3	터	347	347	울산광역시				
10	신천동	745-73	천	156	136	울산광역시				
11	신천동	745-173	터	66	66	울산광역시				
12	신천동	219-3	전	7	7	울산광역시				
13	신천동	745-52	도	5261	5261	국(국토교통부)				
14	신천동	745-53	재	5739	5546	국(국토교통부)				
15	신천동	745-118	채	71552	394	국(국토교통부)				
16	신천동	219-3	도	14	14	강병훈	울산 북구호계로327 3,4C9호(신천동 귀영아파트)	주식회사 경남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	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-1 부산광역시 남구 모현동 1228-5	지상,근저당 근저당
17	신천동	745-72	터	110	110	울산광역시				
18	신천동	745-220	터	6	6	울산광역시				
19	신천동	745-71	천	47	47	울산광역시				
20	신천동	745-113	도	38	38	울산광역시				
21	신천동	745-216	터	3	3	이상현	울산 남구 삼산동 1598-12,403호			
22	신천동	745-219	전	120	120	울산광역시				
23	신천동	745-214	터	246	246	울산광역시				
24	신천동	745-215	터	7	7	이상현	울산 남구 삼산동 1598-12,403호			
25	신천동	745-218	터	70	70	울산광역시				
26	신천동	745-213	터	115	115	허태연	울산 동구 서부동 482-32			
27	신천동	745-212	터	283	283	김방미	경북 칠성군 삼남면 우리리213			
28	신천동	745-211	천	48	48	울산광역시				
29	신천동	745-222	중	283	283	울산광역시				
30	신천동	745-134	터	153	153	소관련	북구 신천동 745-61			
31	신천동	745-210	터	54	54	조광렬	북구 신천동 745-54			
32	신천동	745-209	터	194	194	황유준	호계리 714-??			
33	신천동	745-208	천	80	80	조영상	울산 남구 아음동 878호 대채슬롯드아파트105	주식회사 부산은행	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	근저당
34	신천동	745-221	천	105	105	조영상	울산 남구 아음동 878호 대채슬롯드아파트105	주식회사 부산은행	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	근저당
35	신천동	745-217	천	201	201	조영상	울산 남구 아음동 878호 대채슬롯드아파트105	주식회사 부산은행	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	근저당
36	신천동	163-3	터	649	549	울산광역시				
37	신천동	745-237	천	507	507	울산광역시				
38	신천동	745-59	천	283	283	울산광역시				
39	신천동	158-18	장	90	90	울산광역시				
40	신천동	745-132	장	317	317	울산광역시				
41	신천동	745-223	전	1073	1073	울산광역시				
42	신천동	745-231	상	783	783	울산광역시				
43	신천동	745-236	장	331	331	울산광역시				
44	매곡동	795-236	천	13853	354	국(국토교통부)				
계				104783	19935					

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사서

연번	소재지	시번	물건의종류	구조및규격	수량	소유자			소유권외의 권리관계	
						성명	주소	권리자	주소	권리
1	신원동	745-215	화상실	블록소	6.03㎡	이상권	울산 남구 심산동 1598-12, 203호			
2	신원동	745-213	주택	벽돌조, 스테트	71.70㎡	하태여	울산 동구 시부동 482-92			
3	신원동	745-212	화장실		7.50㎡					
			주택	벽돌조, 스테트	157.90㎡	김남미	경북 울성군 신내면 우라리 2-3			
			주택	스레트	109.10㎡					
4	신원동	745-164	창고		3.24㎡					
5	신원동	745-210	정교	벽돌조, 슬라브	189.80㎡	조광렬	북구 신원동 745-64			
			정교	벽돌조, 슬라브	189.80㎡					
			주택	벽돌조, 슬라브	189.80㎡					
6	신원동	745-209	창고	벽돌조, 스테트	39.70㎡	황응은	후구리 7-4-22			
			주택	벽돌조, 스테트	60.00㎡					
			성포	벽돌조, 스테트	40.20㎡					
7	신원동	745-217	철구조물, 인타이너	정교(조이스스)		소영성	울산 남구 이블동 878롯데캐슬월드아파트 106-1502	수석회사 부산은행	부산광역시 남구 범일동	근거없
계					1065.37㎡					

##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면적	수유자	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	
						성명	주소	관리자	주소	관리	
1	신진동	745-52	도	526'	5261	국(국토교통부)					
2	신진동	745-53	세	5739	5513	국(국토교통부)					
3	신진동	745-118	천	7'552	394	국(국토교통부)					
4	대곡동	795-266	천	13853	354	국(국토교통부)					
계						11557					

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

연번	소지지	지번	지목	지적	면적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		
						성 명	주 소	관리자	주소	관리
.	신전동	745-118	전	71552	710	국(국토교통부)				
2	신전동	745-53	제	5739	547	국(국토교통부)				
3	마곡동	785-286	전	13853	87	국(국토교통부)				
	계			91144	1344					